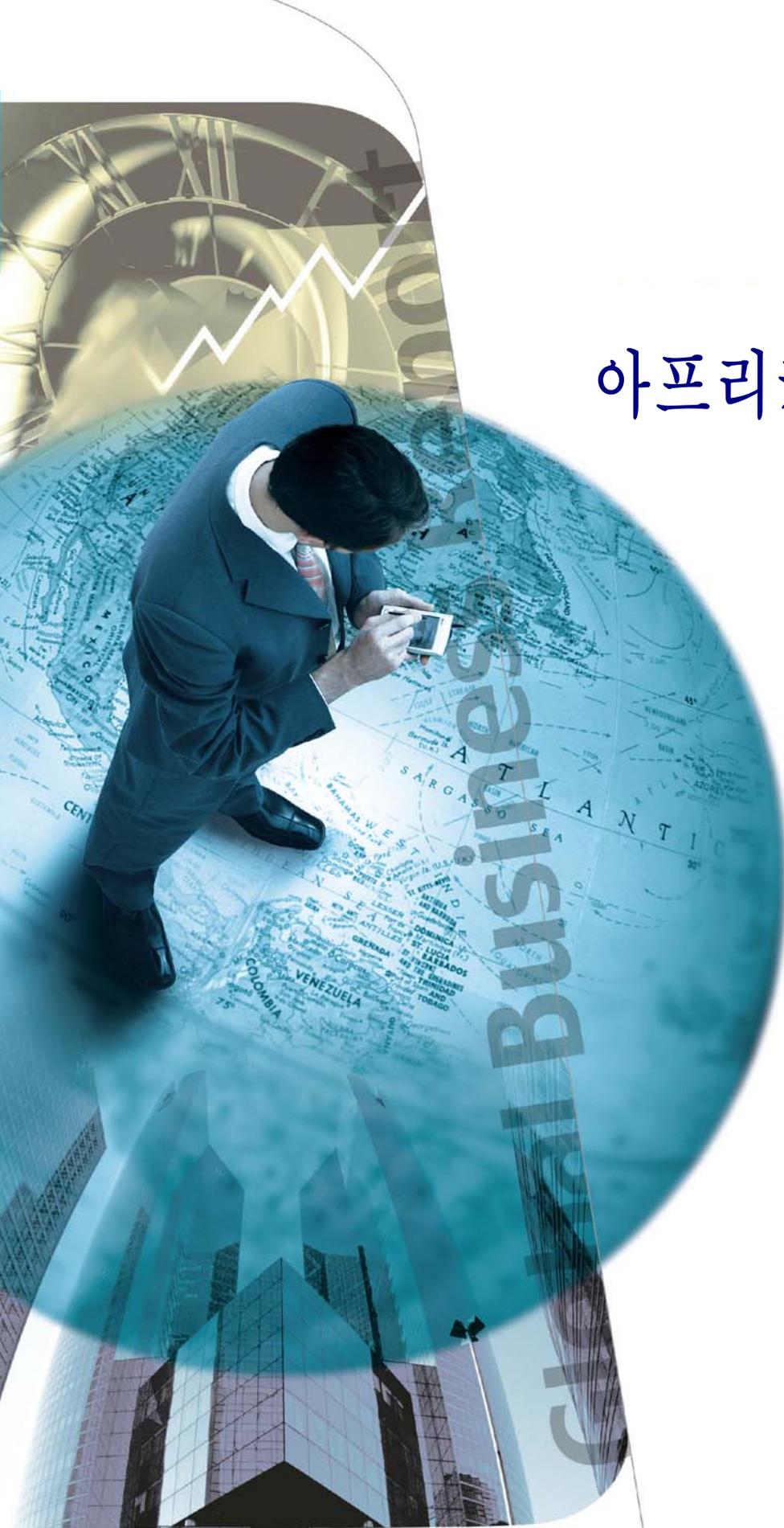


아프리카 표준인증제도 현황 및 의미



CONTENTS

목 차

요약 / 4

1. 주요국의 표준인증제도 운영 개요 / 5

2. 국별 표준인증제도 / 6

3. 우리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 24

4. 종합평가 / 25

요 약

□ 주요국별 표준인증제도 운영 개요

-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은 자국내 표준인증기구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CE마크, ISO인증이 통용되고 있음.
- 남아공 등 아프리카 29개 국가들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해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규격인증서를 인정
- 식품, 전기제품, 의약품 등 일부 민감한 품목은 국가별로 국제인증과는 별개로 자국 등록 및 인증제도를 운영
- 이들 품목에 대한 자국인증의 경우, 국가 및 품목별로 인증획득 절차가 틀리고 기간도 상이하여 사전 파악 및 준비 필요

□ 우리기업 수출시 주의사항

- 국별로 나이지리아에서는 ISO 등 국제규격 인증서가 통용되지 않으므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나이지리아표준기구 인증을 획득하는 등 국가별로 점검
- 전기제품, 의약품 등 민감한 품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도 승인 및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추가 비용 및 시간을 감안

□ 표준화 관련 사전정보 수집 및 협력확대 추진

- 각국 정부는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규격인증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으로, 정부 및 기업차원의 인증정보 수집 및 정부간 협력강화 필요
- 우선적으로 사하라 이남 최대 소비시장인 남아공 표준화기관과 MRA 체결로 상호인증 인정을 통해 표준인증관련 장벽 완화 검토 필요

1. 주요국의 표준인증제도 운영 개요

-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이 표준화 관련기구를 설치하고,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CE마크, ISO인증이 통용되고 있음.
- 식품, 전기제품, 의약품 등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인증과 별개로 자국 관련부처 등록 등 자체적인 인증제도를 운영
 - 자국 인증의 경우에도 국가 및 품목별로 인증 획득 난이도가 틀리며, 3-4일 발급부터 6개월 이상까지 시간이 소요됨.
-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확인된 표준 인증제도가 없고, 표준화 및 품질관리 시스템이 불분명하여 향후 제도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케냐, 나이지리아는 국제인증이 통용되지 않아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지만, 케냐는 인증대상 품목이 많지 않음.

< 아프리카 주요국의 표준인증기관 >

국 명	담당기관	국제 인증	비고
남아공	남아공표준화기구(SABS)	통용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표준화기구(SON)	통용 안됨	비관세 장벽
수단	수단표준미터법기구(SSMO)	통용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품질표준화기구(QSAE)	통용	
케냐	케냐표준청(KEBS)	통용 안됨	일부품목으로 영향미미
이집트	이집트표준품질관리기구(EOS)	통용	
알제리	알제리표준화기구(IANOR)	통용	전기제품은 자국인증 필요
모로코	인증청(SNIMA)	통용	통신, 식품은 자국인증

- 아프리카 국가중 국제표준화기구(ISO) 가입 국가는 나이지리아, 남아공, 케냐, 가나, 앙골라 등 29개국가입.

[ISO가입국가] 알제리, 앙골라,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 아프리카공화국, 콩고, DR콩고, 코트디브아르, 이집트,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봉, 가나, 기니, 케냐, 레소토,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공, 수단,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11.5월 현재)

- 국제전자기술위원회(IEC) 회원 국가는 알제리, 이집트, 케냐, 모로코, 나이지리아, 튀니지, 남아공 7개국임.

2. 국별 표준인증제도

가. 남아공

표준인증제도 유무

- 남아공표준화기구(SABS)는 품질 관리 조치 및 인증제도 실시

표준인증제도 담당기관 및 근거법령

- 담당기관: South Africa Bureau of Standards(SABS)
 - 전화 : +27 12 428 6843
 - 팩스 : +27 12 428 6258
 - 이메일 : info@sabs.co.za
 - Website : www.sabs.co.za
 - 표준화 규격제정, 품질관리, 제품시험 및 인증발급 등 담당
- 근거법령: 표준화 법(the Standards Act, 1945 ;Act No. 24 of 1945)

표준인증 대상품목 : 7개 산업분야, 5,000여 품목

- 화학, 전기전자, 식품 및 보건, 기계류, 광업 및 광산물, 서비스, 운송

□ 표준인증 발급/등록 절차 및 소요비용/기간

- 발급/등록 절차 : 문의/신청 → 공장방문(필요시) → 표준, 능력 테스트, 조건 승인 → 쿼테이션 → 신용조회(필요시) → 예비허가 검사 및 샘플링 → 예비허가 테스트 → 非인증 여부 확인 → 허가 및 등록 → 허가발급 → 허가 후 검사 및 테스트
- 소요비용/기간 : 제품에 따라서 다름.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abs.co.za) 에 제품/분야에 따라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야 함(제품마다 절차가 다름)

□ 국제규격인증의 통용 여부

- SABS와 MRA(상호인증인정협정)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제품이 남아공으로 수출이 될 때 생산지에서 그 나라의 표준인증을 받았으면 남아공에서 따로 발급을 받지 않고, 적합성보증서한(Letter of endorsement of compliance)를 발급해 줌(한국과의 MRA 체결 없음)

나. 나이지리아

□ 표준인증제도 유무

- 나이지리아 표준 기구((Standards Organization of Nigeria; SON)에서 품질표준 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 안전에 위해가 있는 제품 또는 규격 미달의 제품이 나이지리아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5. 11월부터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적합성 검사 프로그램(SONCAP)'을 도입, 시행중임

□ 표준인증제도 담당기관 및 근거법령

- 담당기관 : 나이지리아 표준기구(Standards Organization of Nigeria)
 - 주소 : No.52 Lome Crescent Wuse Zone 7 NG-Abuja, Wuse +2349
 - 전화 : +234 1 27 08 247
 - 팩스 : +234 1 27 08 246

- E-mail: info@sononline.org
- Web: www.sononline.org(표준인증 관련 www.soncap.com 참조)

※ 한국 사무소(SONCO in Korea)

- 주소: 서울시, 중구, 정동 11-3, 두비빌딩 3층
 - 전화: (82) 2 775 5255
 - 팩스: (82) 2 775 5266
 - E-메일: info.seoul.gs@intertek.com
 - 대표: Monica Kim
- 근거 법령 : SONCAP 도입과 관련한 법령은 없고, SON(나이지리아 표준기구)의 지침에 따름. SON의 설립 법령은 'Act No. 56 of 1971 The Standards Organization of Nigeria Act Cap 412 of the law of Nigerian'임.

□ 표준인증 대상품목

- SONCAP은 소위 규정품목(Regulated Products)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주요 대상품목으로는 생명위험제품군(장난감, 전기제품 및 전자제품,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부품(CKD, 자동차 유리, 타이어, 배터리 포함), 화학제품, 기계공구 재료 및 가스기기, 종이제품 및 문구류, 방호용 안전장비) 등임
- 반면, SONCAP는 제외되는 대상품목 리스트(일부 동식물제품, 조제식품, 화학공업제품, 의약품, 비철금속류, 기계류, 선박, 항공기 등 480여 품목)를 별도로 공고하고 있음(이들 품목 중 식품, 의약품 등은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청-NAFDAC의 관리감독을 받음)

□ 표준인증 발급/등록 절차 및 소요비용/기간

(1) 인증 발급 절차

- Product Certificate(제품 확인서)를 먼저 발급 받음(3년 유효)

- 제품 확인요청서 RFPC(Request for Product Certification) 양식을 기입한 후, 검사보고서(Test Report)를 첨부, SONCO에 제출하면 Product Certificate를 발급받게 되며 reference number가 부여됨
- 확인서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사유가 명시되어 통보되며, 필요시 지정 검사기관에서 Test Report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

(2) 소요비용

- Product Certificate 발급비용
 - 제품확인서 신규 발급비용 : 최소 216달러
 - 동일 Test Report에 있는 품목이나 모델이 다른 경우 2달러씩 추가
 - 수정 본 발급(Amendments) 50달러
 - 사본 발급(Duplicates) 50달러
 - * 제품 확인서는 1년간 유효함
- SONCAP Certificate 발급비용
 - SONCAP 확인서 신규 발급비용 : 300달러
 - 수정 본 발급(Amendments) 100달러
 - 사본 발급(Duplicates) 100달러

□ 국제규격인증의 통용 여부

- ISO 등 국제규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출입 절차시 이와는 관계없이 SONCAP을 모든 수출자들이 의무적으로 선적서류와 함께 제출해야만, 통관이 가능함

다. 수단

□ 표준인증제도 유무

- 수단은 1993년 수단 표준 및 미터법 기구 법령 No.14에 따라 「수단 표준 및 미터법 기구(Sudanese Standards and Metrology Organization

: SSMO)」를 설치하고 무역부에 미터부(Metrology Dept.)와 품질관리청을 설치함.

- SSMO는 각종 상품 및 서비스의 표준 규격, 품질 관리 조치 및 인증 제도를 제정하여 왔으며 기관 인증제도도 도입함
- SSMO에서는 위원회 시스템을 채택하여 수단 내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31개 기관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총 3,066개의 수단 표준을 제정함과 아울러 많은 가이드 책자도 발간함.
- SSMO는 국제표준기구(ISO)의 회원이며 CODEX(Food Constitution Committee), AIDMO(Arabian Industrial Crops Committee), ICC(Inter-national Crops Committee)에도 가입되어 있고 ARSO(African Standards Organization) 및 터키에 소재한 IISM(Islamic Institute for Standards and Metrology) 발기 회원이기도 함.
- SSMO는 아직 WTO에 가입하지 않은 수단에서 수단 내의 WTO 대행역할도 담당하고 있으며, IEC(International Committee for Electro-Technology) 및 CEN(European Standards Organization) 과도 관계를 맺고 있음.

□ 표준인증제도 담당기관 및 근거법령

- 표준인증제도 담당기관
 - 기관명 : Sudanese Standards and Metrology Organization (SSMO).
 - 대표 : Abd Alla Hassan Eisa
 - 주소 : Khartoum - Gamaa St. - SSMO HQ Building.
 - 담당 부서 : Standards Specifications Dept.
 - 전화 : +249-183-797895
 - 팩스 : +249-183-762105
 - E-mail : info@ssmo.gov.sd
 - 표준규격부서 E-mail : standards@ssmo.gov.sd
 - 웹사이트 : www.ssmo.gov.sd

- 근거법령
 - Sudanese Standards and Metrology Law, (2008).
 - SSMO Regulation.

□ 표준인증 대상품목

- SSMO는 31개 기관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가 표준인증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SSMO의 31개 기관들은 크게 6개 부문으로 구분됨.
 - 미생물학위원회
 - 동물위원회
 - 엔지니어링위원회
 - 농업위원회
 - 일반위원회
 - 화학위원회

□ 표준인증 발급/등록 절차 및 소요비용/기간

- 수단 표준에 부합될 경우 표준인증은 즉시 발급되며 비용은 150SDG(약 USD54)임.
- 별도 표준을 정해야 할 경우 주 1회 열리는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기간은 보통 한 주일 정도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 수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

□ 국제규격인증의 통용 여부

- 수단은 ISO(국제표준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표준기구들의 회원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모든 국제규격인증이 통용되고 있음.

라. 에티오피아

□ 표준인증제도 유무

- 에티오피아는 표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ISO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식 회원(member body) 으로 ISO 9000 및 ISO 14000의 기준을 따르고 있음.

□ 표준인증제도 담당 기관

- 담당 기관: Quali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Ethiopia
 - 주소: P.O. Box 2310 ET-Addis Ababa
 - 전화: +251 1 11 646 05 25
 - 팩스: +251 11 646 08 80
 - E-mail: qsae@ethionet.et
 - Web: www.qsae.org

□ 표준인증 대상품목

- 총 8,000여 가지의 상품이 표준인증등록이 되어있으며 각 상품별로 그에 맞는 현지, 국제 규정을 따르고 있음.
- 대상 품목은 농산물, 식품, 건설자재, 직물 등을 비롯하여 화학 및 전기 분야까지 다양함.

□ 표준인증 등록 및 소요 기간

- 표준인증 등록은 각 상품에 따라 그 절차와 비용이 다르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등록 기관이 다양하나 대략적으로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 표준인증 등록 절차가 복잡하여 진행이 느리고 소요비용도 많은 편
- 일반적 절차

- 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② 잠재 소비자 의견 수렴
- ③ QSAE(Quali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Ethiopia)
이사회 승인 및 등록

주)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도 최소 5년 마다 재검토하여 최신 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있음.

국제규격인증의 통용 여부

- 국제규격인증이 통용되고 있음.

마. 케냐

표준인증제도 유무

- 케냐에는 (1) 표준인증(Standardization Mark), (2) 다이몬드 품질인증(Diamond Mark of Quality), (3) 수입표준인증(Import Standardization Mark) 등이 있음.



(1)표준인증



(2)다이아몬드품질인증



(3)수입표준인증

- 표준인증은 국내 제조 품목에 적용되며, 수입표준인증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됨.

표준인증제도 담당기관 및 근거법령

- 표준인증은 케냐표준청(Kenya Bureau of Standardization, KEBS) 에서

시험검사 및 발급을 담당하며, 표준법 496조 10항에 의거함.

- 주소 : Popo Road, Off Mombasa Road Behind Belle Vue Cinema
P.O. Box 54974 - 00200, City Square KE-Nairobi
- 전화 : +254 20 605490
- 팩스 : +254 20 609660
- E-mail: info@kebs.org
- Web: www.kebs.org

□ 표준인증 대상품목

- 표준인증은 현지 제조품목에 대하여 거의 모두 적용
- 수입표준인증은 음식류, 전기 제품 및 관련기자재, 기저기 및 위생수건, 장난감에 대해서만 해당하며, 해외 표준인증(CE 등)에 무관하게 케냐표준청 인증 대상임.

□ 표준인증 발급/등록 절차 및 소요비용/기간

(1) 표준인증 절차 (케냐 내 제조품목)

- 발급 또는 등록 절차
 - ① 샘플 접수
 - ② 기술평가 (Scheme of Supervision and Control 지침에 따름)
 - 원자재-제조과정-완제품에 이르는 생산라인 평가
 - 제조과정이 기술된 문서 자료
 - 해당 제품 테스트
 - 제조시 사용된 장비 검사 (Calibration)
 - 제조설비의 위생검사
 - 제품 표기 상태 등
- 소요비용
 - 10개 품목 미만인 경우: 연간 20,000실링 (US\$ 250, 업체등록비) + 품목당 7,500실링 (US\$ 94)
 - 10개 품목 이상인 경우: 연간 20,000실링 (US\$ 250, 업체등록비) + 품목당

5,000실링(U\$ 63)

- 업체등록비의 경우 연간매출액 기준 50만실링(U\$ 6,250) 이상은 20,000실링(U\$ 250), 20만실링(U\$ 2,500)-50만실링(U\$ 6,250) 미만은 10,000실링(U\$125), 20만실링(U\$ 2,500)미만은 5,000실링(U\$ 63)을 부과
- 표준인증은 1년동안 유효하며, 갱신 신청은 만기 2개월 이전에 완료해야 함
- 표준인증 유효기간 중 케냐표준청 직원이 제조사를 불시 방문하거나, 시중 판매 제품에 대해 불시 검사를 시행하여 케냐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비준수 적발시 인증 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취할 수 있음.

(2) 수입표준인증

- 케냐수입표준 인증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해서 CoC(품질적합증서,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제출하며, 3-4일 소요되며 인증비용은 없음.
- 수입품에 대한 CoC가 없을 경우는 FOB가격의 15% 과태료를 차지하며, 인증마크는 CD형태로 제공, 수입업자가 직접 인쇄하여 부착.

□ 국제규격인증의 통용 여부

- 수입품목 중 수입표준인증이 적용되는 음식류, 전기제품 및 관련기자재, 귀저기 및 위생수건, 장난감에 대해서는 국제규격인증에 상관없이 케냐 내 수입표준인증을 받아야 함.

바. 이집트

□ 표준인증제도 유무

- 이집트에는 통합된 표준 인증제도는 없으며, 각 분야별로 상이한 종류의 인증제도가 있음

□ 표준 인증제도 담당기관 및 근거 법령

○ 인증제도 관련 기관

- ① Egyptian Organization for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EOS)
 - 1957년 Egypti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EOS)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1997년 현재의 이름으로 수정됨
 - EOS는 통상·산업부 소속이며 다른 부처와 민간 부문 협력으로 인증을 발행함

- ② General Authority of Export and Import Control(GOEIC)
 - GOEIC 역시 통상·산업부 소속이며 전국적으로 주요 항만과 공항에 위치한 22개 사무소에서 수출입 품목이 EOS가 규정한 인증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

- ③ The 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s(NIS)
 - NIS는 고등교육과학부 소속이며 인증 연구소라 할 수 있음
 - NIS는 품질 검사, 측정 등을 통해 인증 승인을 결정함

○ 인증제도 관련 법령

- 1979년 발효된 대통령 법령 329항에 의해 EOS는 산업 생산품의 질을 증명하는 인증을 발행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이라 명명됨.
- 1996년 발효된 내각 법령 180항은 모든 수입제품이 이집트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적합한 인증이 없을 경우에 국제 표준화 기구의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

• 국제 표준화 기구의 인증은 다음과 같음

International Standards- ISO/IEC
European Standards(EN)
American Standards(ANS)
Japanese Standards(JIS)
Codex Standards for food products

표준 인증제도 대상품목

- 기술 산업: 1,087개 인증
- 화학 공업: 769개 인증
- 식품 산업: 671개 인증
- 섬유 산업: 391개 인증

표준 인증 발급 등록 절차 및 소요 비용/기간

- 인증 발급 등록은 EOS 웹사이트(www.eos.org.eg)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가능하며 EOS 사무소를 방문하여 등록 가능
 - 주소: 16 Tadreeb El- Modarrebeen St. Ameriya Cairo.
 - 전화: +202 22845503
 - Fax: +202 22845501
- 등록 기간은 제품마다 매우 상이하고, 담당자별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비용은 품목마다 상이하나 평균 50~70 EGP 수준임.
* 1USD = 5.93 EGP(2011. 5월 현재)

국제규격 인증의 통용 여부

- 이집트에서 발행되는 인증은 이집트 국내에서만 통용되고, ISO/IEC 등 국제 인증은 이집트 내에서 통용 가능함

사. 알제리

표준인증제도 유무

- 일반적으로 CE, ISO 인증이 통용되나, 전기 등 민감한 제품에 대해서 별도 자국인증제도 운영

표준인증제도 담당기관 및 근거법령(전기제품 중심)

- 전기제품 인증 담당기관
 - 기관명 : 전기가스연구개발센터(CREDEG)
 - 해당실 : 연구개발실
 - 주소 : Route de ouled fayet Numero 36 colline des grands vents El Achour Alger
 - 전화 : 021 38 61 73~83
 - 팩스 : 021 38 62 11/12
 - E-mail : CREDEG@gmail.com

- 알제리표준화기구(IANOR: Institut Algérien de Normalisation)
 - 주소 : 5 et 7 rue Abou Hamou Moussa(ex-rue Daguerre) B.P. 104 R.P DZ-Alger
 - 전화 : +213 21 64 21 41
 - 팩스 : +213 21 64 17 61
 - E-mail : dg@ianor.org
 - Web : www.ianor.org

□ 표준인증 대상품목

- 인증대상 품목
 - 폴리에틸렌 튜브, 폴리에틸렌 판, 낫쇠 튜브, 용접기, 압력조절기, 중저압 전력 기기 등

□ 표준인증 발급/등록 절차 및 소요비용/기간

(1) 알제리 전력가스공사 제품 인증절차의 의의

- 전기, 가스는 민감한 품목이므로 동 제품들의 유통은 Sonelgaz가 명시해 놓은 규격·기술적인 세부 규정에 맞는 제품과 장비 도입이 필수적이므로 동 인증절차 시행

- 알제리 내 전기가스 제품/장비의 상업화 또는 유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

- 관련품목 입찰참여 시에도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임.
알제리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장비의 경우 특히 유리할 수 있음.

(2) 인증의 종류

- 사용임시허가(acceptation) : 최대 1년
- 사용승인(agrement) : 3년(임시허가 취득 후 신청 가능)

(3) 인증승인 절차

① 기술자료 검토

- 작성언어 : 영어 또는 불어
- 연락처 명시
 - 생산자의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주소)
 - Sonelgaz와의 연락 담당자(이름,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주소)
 - 생산 공장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주소)
- 구비서류
 - 생산자 소개 책자(목적, 참조자료 등)
 - 제품소개책자
 - 제조업자의 국내외 판매 실적
 - ISO 9001 증명서
 - 품목의 기술 전표
 - 세부사항 개요(몽타주, 용도 등)
 - 검증받은 기관에서 시행된 제품 실험 기록 등
- 제출방식
 - CD 또는 플래시메모리에 저장해서 제출하거나 PDF파일 형식으로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기 관 명 : 전기가스연구개발센터(CREDEG)/연구개발실
 - 주 소 : Route de ouled fayet Numero 36 colline des grands vents El Achour Alger

- 전화번호 : 021 38 61 73~83
- 팩스번호 : 021 38 62 11/12
- E - mail : CREDEG@gmail.com

- 기술자료 반송

- 동 절차는 1차 부합 여부 및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하며, 서류 미비 시 사유를 달아 반송함.

② 샘플조사

- 기술자료 검토직후, CREDEG의 요청 시, 샘플을 송부
- 동 절차는 무료
- 동 절차에서 마크, 규격, 외형 등을 확인
- 동 절차는 인증 신청 기업의 생산 공장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음.

③ 생산공장 방문

- 생산 공장 방문은 생산수단 평가 및 생산과정 확인을 위해 수행
- 동 절차 수행 시, 알제리 또는 외국기업을 방문하고 테스트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
- 테스트는 공장에서 채취한 샘플로 이루어짐.

④ 실험실 테스트

- 육안상 적합하다고 판명된 제품의 샘플은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절차대로 실험실서 추가 테스트를 함.
- 동 실험은 CREDEG의 실험실 또는 제조자의 실험실에서 이루어짐.
- CREDEG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조사를 행할 권리가 있음: 생산 공장의 이전, 생산 공장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테스트를 행한 지 지나치게 오래된 경우 등
- 4단계 이후, 각각의 제품과 장비에 관련된 종합전표는 CREDEG에 의해 검토되고, 사용 임시허가(acceptation)증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CARAEM 위원회에 제출됨.
- 동 위원회는 유통회사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CREDEG은 사무국 역할을 함.

⑤ 임시허가(acceptation)/임시허가 갱신 단계

- 1년 사용임시허가(acceptation)증은 앞의 모든 조건들이 만족되면 CARAEM(사용허가증 발급위원회)에서 발급
- 1년 사용임시허가(acceptation)증이 이미 발급되었고 같은 해에 활용이 되지 않았다면, 사용승인(agreement) 절차 이전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함.

⑥ 제품의 가용성

- 일반적인 제품의 경우, 실행된 실험상 문제가 없다면 사용임시허가(acceptation)를 하며 제조업자는 알제리 내 판매망을 구축해야 하며 제품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유통 계열사들에 의해 발급된 제품장비에 대한 평가 자료는 다음 단계에 따라 사용승인(agreement) 여부를 결정하는 CARAMEG 위원회에 제출됨.
- 동 위원회는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통회사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CREDEG은 사무국 역할을 함.

⑦ 사용승인(agreement)/사용승인의 갱신

- 1년 동안 제품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위원회로부터(CARAMEG) 유효기간 3년의 사용 승인을 받음.
- 3년 후, 제품/장비가 동일한 수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사용 시 지속적으로 잘 작동하는 경우 사용승인 갱신이 이루어짐.

⑧ 사용승인의 변경

- 생산지가 변경되거나, 생산방식이 변경되거나, 생산제품의 구성물이 변경되는 경우, 제품 본질이 바뀌거나, 기술의 진보 또는 전기가스공사의 상세 명세가 변경되거나 또는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생산자는 새로운 사용승인 요청을 해야 함.

⑨ 샘플 설치 허가, 임시사용허가, 사용승인의 철회

- 승인된 제품과 실제 제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품질이 저급한 경우, 생산 상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임시사용허가, 사용승인 등이 모두 철회 가능

⑩ 승인된 제품의 품질유지 관리

- 사용승인 허가기간 동안 생산 공장, 유통망(매장, 판매대), 공사장 등에서 불시검문이 이루어짐.

(4) 인증 수수료

- CREDEG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임표에 따라 상기한 모든 절차에 대한 수수료가 책정됨.
- 한국의 경우 제품/장비에 따라 14,000~15,000유로 사이에서 수수료가 부과됨.
- 동 수수료는 한 기업에 대한 수수료임.

(5) 인증절차 수행기간

- 한국 현지공장 방문 등의 절차가 수반되는 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됨.

□ 국제규격인증의 통용 여부

- 유럽 인증, ISO 등이 일반 규격제품, 건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널리 통용됨, 단지 민감 품목에 대해서 별도 인증제도 운영

아. 모로코

□ 인증제도 담당기관 및 근거법령

- 모로코 인증제도는 정보통신제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상공신기술부 산하 '인증청(SNIMA)'이 담당
 - 주소 : Angle Avenue Kamal Zebdi et Rue Dadi Secteur 21, Hay Riad MA-10100 Rabat
 - 전화 : +212 537 71 62 14
 - 팩스 : +212 537 71 17 98
 - E-mail : snima@mcinet.gov.ma
 - Web : www.snima.ma
- '인증청'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설정기준에 부합함을 검사하고 확인하며 기술위원회, 검사기구, 테스트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보통신제품은 모로코통신위원회(ANRT)이 정한 규격에 부합해야만 모로코 시장 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률 '24-96'호로 규정

□ 표준인증 대상품목

-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품목은 통신, 식품, 보석 등 제한적임.
- 이슬람 종교의 영향으로 기독교 등 다른 종교 문장이나 표시가 되어 있는 물품은 수입이 금지되며 라벨은 프랑스어 또는 아랍어로 표기
 - 식품은 아랍어로 내용물, 원산지, 생산자, 유통기간을 표기해야 함.
- 식품은 모로코 수입검사국(EACCE)이 모든 수입 농수산물과 식품에 대해 자체 안전기준 등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보석류에 대해서는 세관당국이 인체에 유해한 광물성분 포함여부를 검사하고 자체 인증 표시를 날인한 후 수입을 허가하고 있음.

□ 국제인증제도 통용상황

- CE, ISO 등의 유럽 규격 인증이나 글로벌 심사 기준이 모로코에서도 통용됨. 현지 최종 소비자들에게도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됨.

3. 우리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나이지리아는 수출입 통관시 자국인증기관 발급 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 남아공, 알제리 등 국가의 경우, 국민보건 위생 등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자국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 반면,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는 ISO 등 국제기구 인증서가 통용되므로 표준인증제도가 우리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표준인증제도는 일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까다롭지 않아 우리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아프리카 표준인증제도와 우리의 수출 >

국 명	우리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현안사항
남아공	비관세 장벽, 오랜 시간이 소요. 우리나라에 대한 차별은 아님.	없음
나이지리아	자국인증서 필수 (일부 비인증 품목 제외)	없음
수단	국제규격 인증이 인정되므로 큰 영향은 없음	없음
에티오피아	국제규격인증 통용되므로 큰 영향은 없음	없음
케냐	일부 품목에 국한되어 있어 큰 영향은 없음	없음
이집트	국제규격 인증이 인정되므로 큰 영향은 없음	없음
알제리	국제규격 인증이 인정되므로 큰 영향은 없음. 일부 민감품목은 별도 인증절차로 수출애로 사항임.	없음
모로코	국제규격 인증이 인정되므로 큰 영향은 없음	없음

자료원 : 아프리카 소재 KBC 종합

4. 종합평가

- 아프리카 각국은 표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확립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비관세 장벽으로 대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표준화기관간의 협력 확대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각국별 인증서 획득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 주요시장인 나이지리아 및 남아공과는 표준화기구간의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을 통한 상호규격인증서의 인정이 수출확대에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끝.

2011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BR (Global Business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Check it~! 2011년 해외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2011.1
11-002	한-미 FTA 발효에 대한 美 바이어, 현지 진출 한국기업 및 투자가 반응 조사	2011.1
11-003	남부 수단 독립 진전 현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11.2
11-004	美 바이어가 뽑은 한-미 FTA 10대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11.2
11-005	월드컵 특수, 카타르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동향	2011.3
11-006	위기의 리비아, 대체시장을 잡아라	2011.3
11-007	일본 · 인도 CEPA체결의 파급효과와 현지반응	2011.3
11-008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1편(멕시코, 브라질편)	2011.3
11-009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2편(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편)	2011.3
11-010	동 · 서남아 주요국의 노무여건 변화와 진출기업의 대응 방향	2011.4
11-011	한-페루 FTA 수출유망상품 및 진출방안	2011.3
11-012	일본 대지진 발생 한달 -일본 산업계 복구현황과 대일 수출입 영향-	2011.4
11-013	우리기업의 對인도 투자 트렌드 변화	2011.4
11-014	요르단 물 부족 사태, 정부대책 및 우리 기업 참여 방안	2011.4
11-015	히트상품을 통해 본 일본 소비시장 동향	2011.4
11-016	베트남 유통시장 현황과 진출전략	2011.4
11-017	한-EU FTA 중소기업 수출유망상품	2011.5
11-018	미국 가상상품 시장, 이제 시작이다	2011.5
11-019	키워드로 본 2011년 글로벌 소비트렌드	2011.5
11-020	민주화 사태 이후, 중동 바이어가 전망하는 新 중동 시장	2011.5

□ GIR (Global Issue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1 전망	2011.1
11-002	Post 무바라크 이집트 경제동향 및 전망	2011.2
11-003	한미 FTA에 따른 美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대효과 전망	2011.2

11-004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기업의 대응사례	2011.4
11-005	2011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1.4

□ KEB (KOTRA Executive Brief)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2011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1
11-002	이집트 反정부 시위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1.1
11-003	해외바이어들이 전망하는 최근 이집트사태가 각국 경제 및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1.2
11-004	이집트사태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내역	2011.2
11-005	이집트 사태가 중동과 우리기업에게 미친 영향	2011.2
11-006	중동 북아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영향과 향후전망	2011.3
11-007	일본 지진사태가 주요국의 산업에 미친 영향	2011.3
11-008	2011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3
11-009	Post 중동민주화, 중동진출 새 활로 된다	2011.4
11-010	시리아 민주화 사태에 따른 우리기업의 유의사항	2011.4

□ KOCHI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의 동향 및 전망	2011.3
11-002	세수(稅收)로 보는 2011 중국경제	2011.3
11-003	중국 고속철도 시대와 新소비지도	2011.3

□ 외국인투자정책센터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한-EU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2011.1
11-002	일본 『아시아 거점화 추진전략』 조사 및 시사점 분석	2011.5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2011 지역별 진출전략	2011.1

11-002	MDB를 통한 해외 정보통신시장 진출전략	2011.1
11-003	스마트 TV 플랫폼 및 콘텐츠의 해외진출 방안	2011.1
11-004	SW 글로벌 마켓 클릭	2011.1
11-005	외국인투자기업, 한국과 通하다 - 대표 외국인투자 성공사례	2011.2
11-006	중국의 성시별 해외투자정책 연구	2011.3
11-007	중국의 금융지도	2011.3
11-008	주력품목별 수출시장 전망 및 확대 방안	2011.2
11-009	2010년 해외 고급인력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2011.3
11-010	필리핀 노동법 핵심번역본	2011.3
11-011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1.3
11-012	GUIDE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2011.3
11-013	Partnering for the Better Future - 30 Success Stori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2011.3
11-014	KOTRA 공동물류센터의 중장기 발전 방안	2011.3
11-015	세계 이터닝 전략지도	2011.4
11-016	그린리포트(Vol 11. 2011 Spring)	2011.4
11-017	주요 7개국 M&A 동향 조사	2011.4
11-018	韓國投資指南与企業經營信息 (한국 투자가이드 및 기업경영정보)	2011.5
11-019	300개 외투기업 주요경영지표 분석	2011.5
11-020	국내주요기관의 해외네트워크 2011	2011.5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2011 KOTRA 글로벌마켓 포럼	2011.1
11-002	2011 친디아 포럼	2011.1
11-003	글로벌 SW진출전략 워크샵	2011.1
11-004	2011 KOTRA 해외 공공조달 포럼	2011.1
11-005	2011 아프리카 포럼	2011.1
11-006	한-EU/한-미 FTA 기회와 도전 설명회	2011.1
11-007	2011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포럼	2011.1
11-008	Dow Chemical 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	2011.1
11-009	Global IT Channel Vision 2011 (대형 IT유통사 초청 구매전략 설명회)	2011.2
11-010	글로벌 인재유치 및 활용전략 세미나	2011.2
11-011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긴급점검 설명회	2011.3

11-012	2011 글로벌 공공병원 기자재 조달플라자	2011.4
11-013	브라질 월드컵 프로젝트 설명회	2011.4
11-014	러시아 사하공화국 대통령 경제사절단 설명회	2011.4
11-015	2011 춘계 글로벌 파워텍 연계 세미나	2011.5

Global Business Report 11-021

아프리카 표준인증제도
현황 및 의미

발행인 | 조환익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1년 5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